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05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서미화・김남근・소병훈

김영환 • 권칠승 • 전현희

김종민 · 윤종군 · 김병기

이용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편의시설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장애인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편의 시설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7조의2(편의시설에 관한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편의시
	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현
	황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편의시설 전산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u>수 있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건축법」 제32조제1
	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
	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 전산시스
	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